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 민 평 생 직 업 능 력 개 발 법  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정식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# 1. 의결주문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,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과 관련된 부정수금액의 추가징수 금액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이 개정(법률 제18751호, 2022. 1. 11. 공포, 2023. 1. 12. 시행)됨에 따라,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대상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과태료 가중처분의 누적 차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등 규정(안 제20조의5 신설)

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, 공공기관, 대학 부설기관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정된 기관이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지원 등을

수행할 수 있도록 함.

나.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금액 삭제(안 제50조)

훈련기관, 근로자·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받은 경우, 부정수급 액수에 관계없이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, 추가징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수급 금액 기준(100만원)을 삭제함.

다.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들에 대한 강의 제한 권한 위임 규정(안 제52조제1항제9호의2 신설)
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, 3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, 그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.

라. 과태료 가중처분의 누적 차수 적용기준 명확화(안 별표 5)

과태료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 예정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2. . . ~ . .)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###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”을 “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5(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 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기관
- ②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지원
  2.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에 대한 지원
  3. 지역·산업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와 관

련된 교육·조사·연구 및 평가 지원

4. 그 밖에 지역 기반의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③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

제50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52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법 제35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에 관한 사항

별표 2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3호 중 “전문대학·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후”를 “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교수·부교수·조교수로서”로 하고, 같은 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3호 중 “중등학교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등학교”로 한다.

별표 5의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2호 위반행위란 아목 중 중 “질문에 거짓으로 답변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·감독을 거부·방해·기피한”을 “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”으로 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0조의5, 제50조, 제52조제1항제9호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추가징수 기준 금액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 대상 등) ①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(이하 “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”이라 한다)의 대상자는 <u>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</u> 중에서 선발한다.	제11조(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 대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</u>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20조의5(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을 <u>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u>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

	<p>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</p> <p>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기관</p> <p>②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지원</p> <p>2.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에 대한 지원</p> <p>3. 지역·산업 주도의 인적자원 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교육·조사·연구 및 평가 지원</p> <p>4. 그 밖에 지역 기반의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③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</p>
<p>제50조(추가징수 기준 금액) 별 제56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각각 100만원을 말한다.</p>	<p>제50조(추가징수 기준 금액) &lt;삭제&gt;</p>
<p>제5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</p>	<p>제5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----- -----</p>

<p>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10. ~ 15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9의2. 법 제35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에 관한 사항</p> <p>10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270